

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 특정감사 결과보고

「문화재청 감사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국유재산과 공사·용역·물품 등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

□ 개 요

- 대상기관 :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
- 감사기간 : 2023. 3. 6. ~ 3. 10. / 5일간(실지감사)
- 감 사 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고정주 등 2명
- 감사범위 : 추진단 출범('22.5.4)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□ 감사결과

- 주요 지적사항 : 건축물 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필요, 홍보관 승강기 하자보수 필요, 소방계획서 시행 지연, 실내공기질 측정 지연 등
- 처분요구 : 4건
- 세부내역 : 통보 4건(시정완료 1건 포함)

(단위: 건, 명, 천 원)

합계			징계 (인원)	시정 (금액)	경고 (인원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		고발 (인원)	현지 조치
건수	금액	인원							일반	시정 완료 (금액)	모범 사례 (인원)		
4	-	-	-	-	-	-	-	-	3	1	-	-	-

□ 향후 계획

- 처분요구서 통보 및 시정 등 모니터링 점검 : 2023. 3월 이후

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 지적 및 처분조치 내용

연 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고
1	통보	<p>□ 건축물 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필요</p> <p>○ 청와대 국유재산인 건축물 27동, 토지 16필지, 입목죽 등을 관리위임 받아 추진단에서 국민에 개방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침류각(서울시 유형문화재) 목조문화재의 툇마루 인방 및 기둥에 일반 철물이 다수 고정되어 있고, 지붕에는 잡목 서식과 회침골에 낙엽이 쌓여 빗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 - 경내 및 외곽담장 주변의 등산로에 설치된 출입통제를 위한 위험테이프(비밀계열)가 변색되거나 느슨하게 고정되어 바람에 날리는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설치 관리 <p><처분요구 내용></p> <p>○ 침류각에 설치된 철물과 지붕의 잡목 및 낙엽 제거, 경내 및 외곽담장 주변의 위험테이프는 제거하거나 필요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질로 교체</p>	
2	통보 (시정 완료)	<p>□ 홍보관 승강기 하자보수 필요</p> <p>○ 기존 홍보관 승강기(2001.5.25. 설치)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노후 및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하여,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2.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승강기 교체 작업을 시행하였으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체 이후 정상 작동 중 고장발생으로 운행중지('23.3.1.)되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('23.3.7.)한 상태임 - 현재 승강기 미 작동으로 노약자 등 관람객 불편 <p><처분요구 내용></p> <p>○ 2023. 3. 7.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시정 완료되었으나,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용 통보</p>	

연 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고
3	통보	<p>□ 소방계획서 시행 지연 부적정</p> <p>○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관리위임 받은 건축물 27동 등의 국유재산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수립 및 시행하여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</p> <p>- 소방계획서를 2023년 1월에 작성하였으나, 2023년 3월 현재 까지 미시행</p> <p><처분요구 내용></p> <p>○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조속히 시행</p>	
4	통보	<p>□ 실내공기질 측정 지연 부적정</p> <p>○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관리위임 받은 건축물 중 청와대 본관 등 6개동(3,000㎡이상)은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</p> <p>- 관리위임(‘22.5.10.) 받은 후 현재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미시행</p> <p><처분요구 내용></p> <p>○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</p>	